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년 12월 20일 조례 제17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에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오산시립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건립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4.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5. 유물의 수집·제작·보존·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전시 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7.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박물관 관련업무 담당 국장·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 나.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 라.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